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▶ 시행 2014. 03. 24
[법률 제12516호, 2014.03.24., 일부개정]

◆ 개정이유

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,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·운반·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,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·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,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, 청문 제도 및 법정형(벌금형)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한편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◆ 주요내용

가.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(제2조제9호 및 제24조)

1)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처리시설보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자원화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.

2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로 설치하는 정화처리시설 외에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도 공공처리시설에 추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 도입(제7조)

- 1) 가축분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, 지하수·토양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- 2)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(제8조)

- 1)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2)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,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.

라. 퇴비·액비의 관리강화(제10조·제13조의2·제15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)

1)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·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

한 환경오염물질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2)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·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.
- 3) 가축분뇨처리업자·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, 자원화시설에서는 보다 고품질의 퇴비·액비를 생산하도록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·액비의 품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도록 함.

마. 행정제재의 체계화(제18조 및 제18조의2·제18조의3 신설)

- 1) 종전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설치허가의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기 어려워 위법·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했음.
- 2)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,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- 3)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.

바.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(제27조 및 제28조)

- 1)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관련영업과 신고대상인 재활용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

가축분뇨 관리에 혼선이 있고,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어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함.

- 2)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과 정화시설은 허가대상인 가축분뇨관련영업으로 분류하고,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은 재활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.
- 3)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.
- 4)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,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 하도록 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따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.

사.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도입(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)

- 1)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·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인계·인수내용을 전자정보화하여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.
- 2)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및 액비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.
- 3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,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.

아.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·운영(제38조의2)

- 1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.
- 2) 축산환경관리원은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

:: 축산법령

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·운영관련 컨설팅 업무,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,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.

자. 무허가·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(부칙 제8조)

1)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·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하는 것이 행정·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국민의 재

산권 보호와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.

2)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로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이라는 사실 외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배출시설로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
〈법제처 제공〉

